

사회적 기업의 정체성 확인 및 영역 설정: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심 창 학**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정체성 확인 및 영역 설정과 관련된 탐색적 연구로서 구조·기능적 접근방법과 법적 접근방법에 근거하여 프랑스 사회적 기업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이 확인되었다.

첫째, 구조·기능적 접근방법을 통한 프랑스 사회적 기업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경제활동 통합조직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사회적 취약집단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통합사회적기업으로서 경제활동 통합조직은 1990년대 말부터 빈곤 및 사회적 배제 극복 정책의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다양한 유형의 통합 구조(조직), 인증제도, 국가 임금 보조 제도를 통한 통합 근로자 채용, 집행과 관련된 지방정부의 강력한 역할 등이 경제활동 통합조직의 특징이다.

둘째, 프랑스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적 접근방법은 공공이익의 협동조합 회사(Scic)에 대한 관심으로 귀결된다. 2001년 등장한 공공이익의 협동조합 회사는 짧은 연륜, 높지 않은 고용 효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새로운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사회적 유용성과 기업정신의 결합, 새로운 민주주의 운영 방식의 도입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셋째, 프랑스 사례 분석 결과 사회적 기업의 등장은 사회적 경제의 정체성 약화·해체를 야기하기 보다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재해석을 통한 외연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기업·경영적 속성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사회적 경제의 가치인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제한적 이윤 배분, 독립성과 자율성 원칙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유용성과 공익 개념이 사회적 기업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일반화 여부는 향후 연구 과제이기도 하다.

주제어 : 프랑스의 사회적 기업, 구조·기능적 접근방법, 법적 접근방법, 경제활동 통합조직, 공공이익의 협동조합 회사

* 이 논문은 경상대학교 인권사회발전연구소 주최 정기세미나에서 발표된 것임. 이 논문은 2012년도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연구장학재단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경상대학교 인권사회발전연구소 책임연구원

1. 서론

불편한 진실 하나.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은 전부 몇 개인가.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12월 현재 인증 사회적 기업은 전부 680개라고 한다. 여기서 또 다른 질문 하나. 예비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의 범주에 제외시켜야 하는가. 2011년 11월 현재 예비 사회적 기업은 1,291개이다(고용노동부, 2011). 만약 예비 사회적 기업까지 포함시킨다면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680개가 아니라 약 2,000여개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불편한 진실 두 번째. 국내 학계 혹은 언론이 외국의 사회적 기업을 소개할 때 영국에는 약 55,000여개, 프랑스에는 200,000여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다고 강조한다¹⁾. 하지만 이러한 소개 역시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영국 정부의 개념 정의에 부합되는 사회적 기업 숫자는 55,000여개임은 분명하다(Office of the Third Sector, 2006: 5). 하지만 영국 사회적 기업의 법적 용어인 지역공동체이익 회사(CIC)의 숫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21,000여개에 불과하다. 이 경우 영국의 사회적 기업 숫자는 55,000여개인가 아니면 21,000여개 인가. 프랑스 경우 역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 중인 조직은 200,000여개이다(2006년 기준). 하지만 이중에는 국내에 알려진 바와 달리 사회적 기업이 아닌 것이 대부분이다. 더 나아가서 사회적 기업의 프랑스 법적 용어인 공동이익 협동조합 회사 숫자는 190여개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프랑스의 사회적 기업 숫자는 190개에 불과한가. 국제 비교 연구에서 프랑스를 언급할 때 ‘경제활동 통합조직(SIAE)’을 프랑스의 사회적 기업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식은 어디에

1) cf. 조영복, 2008, 27-36.

기초하고 있는 것일까.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규모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혼란에 대한 의구심에서 시작된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범위 설정과 관련된 접근방법을 먼저 이해하고 이를 프랑스 사례에 적용시키고자 한다. 사회적 기업의 정체성 및 영역설정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다(심창학, 2007). 첫째, 법적 접근 방법으로서 이는 독립된 사회적 기업 관련법에 기초하고 있다. 즉, 개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 조직만을 사회적 기업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명시되어 있는 소정의 절차를 거치고 인증 받은 조직만을 사회적 기업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접근방법이다. 프랑스 역시 사회적 기업과 직결되는 공공이익 협동조합 회사(Scic)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는 경우 프랑스에서 운영 중인 사회적 기업 수는 190개라는 추론이 가능하다(2010년 기준). 필자의 판단으로는 국내 대부분의 연구는 본 접근방법에 의존하고 있으며, 프랑스 일부 학자의 연구 역시 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²⁾. 사회적 기업의 법적접근방법은 사회적 기업의 정체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심도 깊은 사례 연구(case study)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접근 방법은 특정 국가의 사회적 기업의 실체가 과소평가될 수 있는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조직 성격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약으로 인해 사회적 기업의 범주에서 배제되는 조직이 상당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의 정체성 확인 및 영역 설정의 두 번째 접근방법은 구조·기능적 접근방법이다. 이는 사회적 기업 관련법의 존재 유무 혹은

²⁾ 대표적인 프랑스 학자 연구로서는 G. Lindsay and L. Hems, 2004.

사회적 기업의 법률적 지위에 관계없이 해당 조직의 목적 및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기업의 범위를 설정하는 방법이다. 즉 특정 조직의 설립 취지 및 목표가 무엇이며, 이의 사회적 기능은 어떠한가(기능적 접근방법), 그리고 조직의 내부 구조 구체적으로 조직의 성격, 구성원의 성격, 의사 결정 원칙 및 방법, 공적 기관 등 외부 기관과의 관계에서 본 자율성 정도(구조적 접근방법) 등이 사회적 기업의 성격에 부합되는지의 판단을 통해 특정 조직의 사회적 기업 범주 내의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우선 사회적 기업의 판단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필요로 한다. 대표적인 것이 유럽의 사회적 기업 연구 네트워크인 Emes(European Research Network) 사례이다. 후술하겠지만 Emes는 사회적 기업의 범주로서 경제적, 기업 경영적 측면의 4가지, 사회적 측면의 5가지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기준은 사회적 기업의 구성체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상호 중첩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으나 구조·기능적 접근방법은 법적 접근방법에 비해 사회적 기업의 외연은 확장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이러한 접근방법은 사회적 기업 관련법의 제정 혹은 기존법의 개정에 직접 해당되는 새로운 조직 형태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업 경영적 역동성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조직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가에 따라서는 많은 사회적 기업이 민간 기업(상법상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는 한국보다는 사회적 기업의 역사가 오랜 유럽에서 많이 발견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프랑스의 경우, 사회적 기업과 직결되는 법은 2001년에 제정되었지만 사회적 기업의 성격에 부합되는 조직은 그 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이러한 조직은 단체, 협동조합, 공제 조합 등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영역의 법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 기존의 사회적 경제와 차이 나는 부분은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및 제공을 통해 일정 부분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의 대표적인 조직이 ‘경제활동 통합조직’이다. 이는 사회적 기업 활동 중 취약 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통합 사회적 기업으로서 국제 비교 시 많이 언급되는 조직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방법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구조·기능적 접근방법을 통해서 프랑스 사회적 경제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기업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하며, 법적 접근방법은 최근 부상 중에 있는 새로운 법적 형태의 사회적 기업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³⁾.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정체성 확인 및 영역 설정의 탐색적 연구로서 상호 보완적인 관점에서 구조·기능적 접근방법과 법적 접근방법에 근거하여 프랑스 사회적 기업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의의 및 기대 효과를 필자 나름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국가의 사회적 기업의 규모를 제시할 때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먼저 제시되어야 함을 본 연구는 보여줄 것이다. 둘째, 사회적 기업의 규모가 단순한 숫자 높음이 아니라 이의 사회 경제적 영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임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국가 비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해 및 편견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와의 관련성과 관련된 심도 깊은 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경제 영역에 속하는 조직임과 동시에 일정부분은 이를 이탈하고 있는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은 사회적 기업의 발달이 사회적 경제의 정체성 상실을 가져오는 것

³⁾ 이는 구조·기능적 접근방법의 상대적 우월성을 강조한 필자의 초기 관점에서 변화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심창학, 2007을 참조.

인지 아니면 반대로 이의 외연 확대를 가져오고 있는가에 관한 것으로 본 연구는 이를 프랑스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구조·기능적 접근방법과 법적 접근방법을 통해서 본 사회적 기업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 대상 국가는 프랑스이다. 사회적 경제가 일찍이 등장, 정착된 국가일 뿐 아니라 여기서 나타나는 사회적 기업의 최근 동향은 사회적 경제와의 관련성을 살피는데 적절한 사례로 판단된다.

글의 순서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두 장으로 구성된다. 본문의 첫 번째 장은 구조·기능적 접근방법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노동통합 사회적 기업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통합 사회적 기업이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의 개념 및 영역을 먼저 살펴본다. 이어서 구조·기능적 접근방법의 대표적 사례인 Emes의 사회적 기업 범주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프랑스의 노동통합 사회적 기업의 유형 및 각 유형별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노동 통합 사회적 기업이란 용어는 Emes가 사회적 기업의 국가 비교 목적으로 만든 학문적 용어라는 점이다. 이에 해당되는 프랑스내의 공식 용어는 ‘경제활동을 통한 통합조직’이다. 따라서 본 글은 프랑스의 ‘경제활동 통합조직’의 특성과 Emes의 사회적 기업 범주 양자의 양립성에 주목할 것이다.

본문의 두 번째 장은 공공이익 협동조합 회사에 관한 것이다. 이는 법적 접근방법을 통해서 도출된 조직일 뿐만 아니라 프랑스 사회적 기업의 최근 경향을 보여주기도 할 것이다. 흥미로운 점 중의 하나는 공공이익 협동조합 회사는 협동조합의 성격과 일반기업의 성격이 결합된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프랑스 협동조합의 오랜 전통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글은 관련법의 등장 배경, 공공이

의 협동조합 회사의 구체적 내용 및 특징, 현황 등을 살펴볼 것이다.

2. 경제활동을 통한 통합(구조) : 구조·기능적 접근의 관점에서 본 프랑스 사회적 기업

1) 구조·기능적 접근방법 : Emes의 사회적 기업 범주

여기서는 프랑스 사례 연구의 전제로서 사회적 기업의 영역 설정에 대한 구조·기능적 접근방법의 대표적 사례인 Emes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기업 국가 비교를 위한 유럽 연구자 네트워크인 Emes는 2000년대 초부터 유럽 연합의 지원 하에 유럽 국가의 사회적 기업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우선 사회적 기업을 목적에 따라 사회적 취약 집단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는 노동통합 사회적 기업, 욕구 충족의 차원에서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 서비스 제공 사회적 기업, 마지막으로 지역개발 중심형 사회적 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C. Borzaga and J. Defourny, 2001, 351-352). 이 중 Emes는 앞의 두가지 유형의 사회적 기업 연구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⁴⁾. 이 중 본 글에서는 노동통합 사회적 기업(work-integration social enterprises)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Emes는 노동 통합 사회적기업의 특징 파악을 위해 아래 <표 1>과 같이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어서 각 측면과 직결되는 범주(criteria)를 제시하고 있다⁵⁾.

4) 국가별 비교 연구 결과의 일부에 대해서는 C. Davister, 2004를 참조.

5) <http://www.emes.net/index.php?id=203>; J. Defourny, 2001, 16-18 ; 심창학, 2007: 67-70.

〈표 1〉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범주와 구조·기능적 성격

측면(dimensions)	범주(criteria)	성격
경제적·기업 경영적 측면	지속적인 제품 생산과(혹은) 서비스 판매 활동	기능
	높은 정도의 자율성	구조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위험	기능
	일정 비율 이상의 유급 근로	구조
사회적 측면	시민 사회(시민 그룹)의 주도	구조
	자본 소유에 기초하지 않는 의사결정권	구조
	활동 관련 행위자들의 참여적 성격	구조
	제한적 이윤 분배	기능
	지역 사회 공헌의 명확한 목표	기능

위의 <표 1>의 범주 중, 구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높은 정도의 자율성, 일정 비율 이상의 유급 근로자 고용, 시민사회(시민그룹)의 주도, 자본 소유에 기초하지 않는 의사결정권 마지막으로 활동 관련 행위자들의 주체적 참여를 들 수 있다. 먼저, 높은 정도의 자율성은 사회적 기업이 자발성에 기초하여 설립되고 자율적인 프로젝트의 틀 내에서 설립 주체들에 의해 경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사회적 기업은 일정 비율 이상의 유급 근로자 채용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전통적인 비영리 단체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업 역시 화폐 자원, 비화폐 자원, 자원봉사자 등으로 자원이 구성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은 일정 비율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포함해야 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의 목적 중의 하나가 바로 노동시장 취업 애로 집단(통합근로자)을 위한 일자리 제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급 근로자 중에서도 통합 근로자의 채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주도(an initiative launched by a group of citizens)를 많이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 주민 혹은 특정

욕구 혹은 목적을 공유하고 있는 그룹이 참여하는 집단 역동성의 결과가 바로 사회적 기업인 것이다. 네 번째, 사회적 기업에서는 자본 소유에 기초하지 않는 의결권이 강조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은 지지 조직, 지역 공공 기관, 유급 근로자, 자원봉사자 및 이용자 등 다중 이해관계자(multi-stakeholder)의 참여를 전제로 설립·운영된다. 의사결정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1인 1표제’를 원칙으로 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 투표권이 적어도 자본 소유에 따라 배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주의적 조직 운영의 측면이 강조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 구조적 측면의 마지막 요소는 사회적 기업 활동과 관여되는 사람들의 참여적 성격에 관한 것이다. 참여 대상으로서는 사회적 기업 창설자 및 지지 조직, 유급 근로자, 지역 기관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이용자까지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사회적 기업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는 경제활동을 통한 지역사회내의 민주주의의 활성화이기 때문이라고 Emes는 강조하고 있다.

다음, 사회적 기업의 기능적 측면의 첫 번째 항목으로서는 지속적인 재화 생산 혹은(그리고) 서비스 판매 활동을 들 수 있다. 이 점은 보르자가와 샌투어의 지적과 같이 지지 및 옹호 역할에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비영리 조직과 사회적 기업을 구분 짓게 하는 부분으로(C. Borzaga and A. Santuari, 2003, 45), 사회적 기업 존재 가치의 가장 중요한 이유 혹은 주요 이유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둘째,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위험 부담(a significant level of economic risk)이다. 사회적 기업의 설립 주체는 전적 혹은 부분적으로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대부분의 공적 제도와 달리, 사회적 기업의 재정적 생명력은 적절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구성원 및 근로자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사회적 기업

에서는 제한된 이윤 배분이 강조된다. Emes에 의하면 사회적 기업은 이윤 배분과 관련 두가지 유형의 조직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완전한 이윤 배분 금지 및 이윤 재투자를 특징으로 하는 조직이 첫 번째 유형이고, 이윤 극대화 행위는 피함과 동시에 제한된 이윤 배분이 이루어지는 조직이 두 번째 유형이다⁶⁾. 넷째,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기여라는 명확한 목표를 사회적 기업은 지니고 있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 전체 혹은 특정 집단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주요 목표 중의 하나로 견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Emes는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의 연장선상에서 사회적 기업은 지역 수준에서의 사회적 책임감 증진에 대한 강한 희망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 본 바와 같이 Emes의 사회적 기업 범주는 자발적, 민주주의적 조직 운영(구조)과 동시에 일반 기업의 성격 및 운영 목적의 사회적 성격의 결합(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표 1>에 나타나 있는 범주들은 규범적 성격의 범주가 아니라 하나의 이상형(idea-type)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즉 범주들은 특정 조직이 사회적 기업의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체(a set of conditions)라기 보다는 연구자가 특정 조직의 사회적 기업 포함 유무를 파악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 조직체(a set of organizations)의 경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도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J. Defourny and M. Nyssens, 2006, 7)⁷⁾.

6) 이윤의 활용 부분은 미국의 NPO와 유럽의 사회적 경제를 구분 짓는 항목이기도 하다. 즉 미국의 NPO 개념은 이익 배분 금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 유럽의 사회적 경제 개념은 제한된 이윤 배분을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협동조합이며, 보험료 하락의 형태로 나타나는 공제조합 형태의 보험 회사도 이에 포함된다 (A. Evers and J.-L. Laville, 2004, 12-13).

7) 예컨대, 이들 범주에 근거하여 유럽 11개국의 160개 사회적 기업을 비교 분석한 Emes는 범주에의 부합정도를 기준으로 중심 그룹(central group)과 주변 그룹(peripheral group)으로 구분하고 있다(J. Defourny, 2004, 11).

이를 바탕으로 다음 절에서는 프랑스 노동통합 사회적 기업의 대표적 사례로 간주되고 있는 경제활동 통합조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프랑스의 경제활동 통합조직(SIAE)

(1) 경제활동 통합조직의 사회적 경제와의 관련성

① 사회적 경제개념과 전통적 하위영역

제3섹터의 미국식 접근방법이 비영리조직 접근방법(non-profit sector approach)이라면, 이의 유럽식 특히 프랑스적 접근방법은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J. Defourny, 2001, 3). 프랑스에서 19세기 초에 등장한 사회적 경제 용어의 등장은 경제영역에 대한 다음과 같은 3구분법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이윤에 따라 행동하는 사적 소유자의 상업적 민간경제가 첫 번째 경제영역이라면 정부 지출에 의해 작동되는 공공분야 역시 경제 영역의 하나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활동주체가 공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윤 추구보다는 공공선의 실현이 활동 목적인 경제 영역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이다. 한편, 이러한 사회적 경제의 실체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바, Defourny(2001)는 이를 두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규범적 관점이다. 이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는 이익 창출보다는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봉사 목적이 강한 활동 영역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자본보다는 인간, 수익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사회적 경제이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사회적 경제는 ①자율경영 ②민주적 의사결정 ③이익 분배 측면에서 이익 배분의 제한과 동시에 자본보다는 노동, 더 나아가서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경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관점이다. 이는 고유의 법적 위상을 지니고 있는 민간

조직 혹은 그 활동 영역을 의미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협동조합, 공제조합 그리고 시민단체를 들 수 있다. 아래 <표 2>는 사회적 경제의 하위 영역 및 영역별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사회적 경제의 하위 영역과 특징

유형*	특징
협동조합 (co-operativ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발적, 개방적 가입 및 참여 -민주주의 구조 : 동등 투표권/다수결 의사결정/회원에 대한 선출직 지도부의 책임 -조합원의 출자금 기여 -자율성과 독립성 -형평성, 공정성에 바탕을 둔 경제적 결과의 분배 -주요 활동 영역 : 농업(시장점유율 : 네덜란드 83%, 프랑스 50%), 임업(스웨덴 60%), 금융(프랑스 50%), 소매(핀란드 36%) 및 보건의료(스페인, 21%) -유럽 현황: 250,000개, 1억6300만명 참여(유럽인구의 3분의 1), 540만명 고용
공제조합 (Mutual socie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발적, 개방적 회원 가입 -동등 투표권/다수결 의사 결정 -협동조합과의 차이: 출자금 없음/ 보험 산출방식에 의거한 회비(기여금) 납부 -주요 활동 영역 : 의료, 생명보험, 보장성 보험, 주택 모기지업 -유럽 현황 : 보험시장의 25%, 보험회사의 70%
시민단체/자원조직 (Associations/ voluntary org.)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발적, 개방적 회원가입 -동등 투표권/다수결 의사결정 -출자금 없음/ 회원 회비 -자율성과 독립성 -주요 활동 영역 : 서비스 제공자, 자원봉사, 스포츠, 옹호/이익대변, 보건의료돌봄, 노인, 아동 돌봄 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 이 외에 재단, 최근에는 사회적 기업도 사회적 경제 하위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음.
 자료: http://ec.europa.eu/enterprise/policies/sme/promoting-entrepreneurship/social-economy/index_en.htm (2012년 8월 6일 검색)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리

위의 <표 2>에서처럼, 3대 사회적 경제 조직은 상호 일정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먼저 재원확보방식, 활동 영역 그리고 수혜집단의 성격 면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다. 예컨대, 협동조합은 조합

원의 출자금이 주요 재정이며 혜택 또한 조합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가별로 주된 활동 영역이 다르나, 주로 농업, 임업 그리고 금융업에서 많이 발달되어 있다. 공제조합의 재정은 출자금이 아니라 회원의 회비(또는 보험료)에 바탕을 두고 있다. 보건 그리고 보험분야가 주된 활동 영역이다. 시민단체 역시 공제조합과 마찬가지로 회비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하지만 공제조합과 달리 주된 활동 영역이 매우 포괄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세 조직의 차이점 못지않게 공통점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세조직 모두 자발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점은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출자금 혹은 회비의 차이에 관계없이 평등한 투표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다수결 의사결정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 및 의사결정의 민주주의적 성격은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 제한적 이윤 배분과 함께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의 3대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Th. Jeantet, 2006, 46-47)⁸⁾.

② 경제활동 통합조직의 등장

한편, 이들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조합원 혹은 회원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인해 공동체 구성원, 더 나아가서 전체 사회 구성원의 이익 추구라는 공동선을 지향함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특히 1970년대부터 등장한 실업 문제, 1980년대의 빈곤 및 사회적 배제 문제는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직으로는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

⁸⁾ 대안경제의 하나로서 사회적 경제 외에 1980년대 프랑스에서 등장한 연대경제라는 용어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는 운영방식의 특징에 초점을 두고 있는 사회적 경제와는 달리 자립지원과 사회연대라는 목적성을 상대적으로 많이 강조하고 있다(노대명, 2007: 39). 예컨대, 공정 거래,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지역생산물 유통제도 등은 이에 바탕을 둔 것이다. 최근에는 두 용어의 복합어인 사회연대경제(Economie sociale et solidaire, ESS)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박찬용, 2012: 237-238). 한편, 사회적 경제의 국내 문헌으로서는 주성수, 2010이 대표적임.

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사회적 경제의 성격과 일반 기업의 성격을 동시에 보여주는 새로운 사회적 경제 조직이 탄생했는데 이것이 바로 ‘경제활동을 통한 통합조직(Les structures d’insertion par l’activité économique, 이하 경제활동 통합조직 혹은 SIAE라 칭함)’⁹⁾이다. SIAE와 관련된 프랑스의 정부의 개념 정의를 살펴보면, 먼저 경제활동 통합(이하 IAE로 표기)은 ‘사회적 한계 집단의 사회 재통합에의 기여를 목적으로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활동 영역과 실제’로 정의되며, 이들의 집합체가 바로 경제활동 통합조직(SIAE)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IAE는 사회적 한계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구체적인 국가 정책 혹은 프로그램이며 SIAE는 본 프로그램의 운영기관인 것이다. 한국과 달리 사회적 기업 용어가 국가 정책 혹은 법률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프랑스의 사회적 기업을 논할 때 SIAE가 언급되는 것은 바로 프로그램의 목표 및 기관의 운영 취지가 바로 사회적 한계 집단의 일자리 창출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SIAE의 기원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견해가 다르다. 예컨대, Demoustier(1998)는 1950년대 민간 주도로 지체 및 정신 장애인을 위해서 설립된 사회시설(CAT)과 보호작업장(AP)을 SIAE의 기원으로 보고 있다. 한편, 1970년대, 사회적 취약 집단을 대상으로 카톨릭 단체에 의해 설립, 운영되기 시작한 사회재통합시설(CHRS)에서 SIAE의 기원을 찾는 학자도 있다(Ph. Brègeon,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SIAE가 빈곤 및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국가 정책의 운영기관으로 자리 매김 되었던 것은 빈곤 및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법이 제정되었던 1998년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¹⁰⁾. 왜냐하면 동법은 그동

⁹⁾ 직역하면 ‘경제활동을 통한 통합구조’이지만 좀 더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경제활동 통합조직’으로 칭함. 한편, 조직 활동의 목표에 초점을 두고 이들 조직을 자활기관으로 명명한 국내연구도 있음. cf. 박찬용, 2012.

¹⁰⁾ SIAE의 도입 및 정착의 역사와 관련하여 Brègeon(2008)은 1975년-1983년, 1984년

안 사회적 한계 집단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조직들을 경제활동 통합조직이라는 용어 하에 편입시킴과 동시에 IAE가 하나의 국가정책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활동 통합조직과 관련된 동법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¹¹⁾.

첫째, SIAE의 세가지 활동 영역을 인정하고 있다. 상업화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사회적 유용성,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사회적 유용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법적 정의는 없으나 묵시적으로 시장 영역이 아닌 집단 욕구에 부응하는 구조 그리고 근로와 사회화를 통한 교육 활동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둘째, SIAE를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주요한 파트너로 규정하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국가와 SIAE와의 체계적인 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활동에의 통합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든 행위자들은 실업과 배제 극복에의 참여의 이름하에 국가 지원의 수혜자가 된다. 협약 내용에 의해 국가 재정 지원의 조건 및 양태가 결정된다고 동 법은 강조하고 있다.

셋째, 인증제도(agrément)를 명시하고 있다. 경제활동 통합조직에 속하는 11개의 조직 유형 중에서 동법의 인증 적용 대상이 되는 조직 유형은 중개단체(AI), 통합기업(EI), 임시노동통합기업(ETTI), 통합작업장(ACI) 등 전부 4개이며, 나머지 7개 조직 유형은 인증 대상은 아니지만 사회적 기업에 부응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인 인증 절차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지방정부에 사회 프로젝트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는 해당 조직의 사회적 기여의 구체적 분야 및 목표,

-1997년, 1998년 이후의 세시기로 구분한다. 특히 제2시기를 최초의 공적 지원이 시작된 시기로 보고 있다.

¹¹⁾ Loi No. 98-657 du juillet 1998 d'orientation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s exclusions. *Journal officiel. Lois et décrets.* Le 31 juillet 1998.

충원계획, 재원확보방식, 기업운영방식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인증 기간은 2년이며 갱신 가능하다.

넷째, 인증과 관련된 프랑스 특징 중의 하나는 지자체의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DDTEEP(도의 노동, 고용 및 직업 훈련국), CDIAE(도 경제활동 통합 위원회), DDASS(도 산하 위생 및 사회복지) 등이 사회적 기업 인증과 관련된 서류 접수, 인증 여부 결정, 지원액의 결정 등 핵심 사안을 맡고 있다(Ministère de l'emploi et de la solidarité, 2000 ; Dares, 2011). 다시 말하면 사회적 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강력한 지방화(지역화)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동법은 경제활동 통합조직이 실업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 중의 하나로서 고용 지원 센터¹²⁾와의 예비 협약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제활동 통합조직에 취업하길 원하는 사회적 취약 계층(‘통합근로자’라 칭함)은 사전에 고용 지원 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고용 지원 센터가 실업자(the unemployed)뿐만 아니라 사회부조 수급자 등 노동시장 취약집단까지 그 관리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미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통합 근로자의 채용 시 경제활동 통합조직은 기본적인 운영비 지원뿐만 아니라 근로 계약의 성격에 부응하는 국가 지원(예: 임금보조)의 혜택을 받는다.

이와 같이 초기에 민간의 주도로 설립, 운영되었던 경제활동 통합조직은 1998년의 빈곤 및 사회적 배제 극복법을 통해 국가 정책의 파트너로 규정되면서 인증 및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조직이 되었다.

¹²⁾ 당시는 ANPE. 현재는 Pôle Emploi로 개칭.

(2) 경제활동 통합조직의 유형 및 이의 사회적 기업 성격

① 경제활동 통합조직의 유형

현재 프랑스에서 운영 중인 경제활동 통합조직은 5,300여개이며 근로자 수는 253,000명으로 이는 프랑스 전체 고용의 1.3%에 달한다(2006년 기준). 그리고 전부 11개의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본 글에서는 관련법에 의해 인증 적용 대상인 4가지 유형의 특징을 개관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프랑스의 인증 경제활동 통합조직의 유형 및 특징

	ACI (통합 작업장)	AI (중개단체)	EI (통합기업)	ETTI (임시노동통합 기업)
법적조직 형태	시행령에 준함	시민단체	단체, 시장 영역의 기업(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개인회사...)	임시노동통합 기업(법령에 준함)
주요 적용 대상	26세미만 노동시장취약 청년집단, 사회적미니멈수급 자, 장기구직자, 사회부조수급자	26세미만 노동시장취약청년집 단, RMI수급자, 장기구직자, 등록장애근로자	26세미만 노동시장취약청년집 단, RMI수급자, 장기구직자, 사회부조수급자	최동
활동영역	비경쟁 혹은 혼합 영역*	경쟁영역	경쟁영역	경쟁영역
가입양식	사회적 유용성 활동 증진(지역주민의 미충족 욕구 부응)	개인, 단체, 지자체, 기업 등에 취업 알선 (기간제)	제품 및 서비스생산(시장 판매)	연계 기업에 취업(단기 업무)
임무	동행, 기술 능력제고, 훈련(재적용 과정, 개별화)	채용, 개별화된 취업 경로 입안, 사회부조담당기관 접촉, 안정된 직업 재통합 도움, 구인 정보 획득	적용대상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생산 활동 제공을 통한 통합(노동리듬재발 견, 훈련, 사회동행...)	사회 재통합, 이후 직업재통합
근로 계약	국가 재정 지원하의 보조 계약(CAV, CAE, CIE, CI-RMA) 혹은 인턴 최저 6개월(주당 20시간 이상)	무기(파트타임), 기간제. 기업 채용은 1년 중 240시간 초과 못함, 시민단체 채용은 제한 없음	고용지원센터의 사전 승인 필요 기간제(최대 24개월, 갱신 가능).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24개월(갱신가 능),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국가	-보조계약	-사회보장 사용자	-등록 구직자에	-등록

지원	근로자의 임금 국가 부담 -보조 계약 경우 사용주 분담금 면제 -취업동행서비스 지원(3개/작업장 년최대 45,000유로)	분담금, 부가가치세, 회사세, 직업세 면제(근로자 1인당 1년 기준 750시간 한도) -취업동행서비스지 원(기관별 년최대 30,000유로, 2005년 7월부터 적용)	한해 사회보장 사용주 분담금 경감(2005년 7월부터 적용) -사회통합일자리 창출 지원(전일제기준 9,681유로) - FSE와 공동 지원(50%까지)	구직자에 한해 사회보장 사용주 분담금 경감(2005년 7월부터 적용) -일자리 동행 지원(전일제 12명 당 51,000 유로)
통합조직 수(개)*	1,460	782	989	225
통합근로 자 수(명)*	30,450	129,467	13,130	25,425

* 사회적 유용성 활동과 제품 및 서비스 생산 판매 겸용을 의미함.

자료 : Dares, 2011의 내용을 재정리

<표 3>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활동 통합조직의 대표적인 4가지 유형 조직의 특징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차이점과 관련하여, 각 유형의 운영 목표 및 구체적인 운영 내용에서 일정부분 차이가 있음이 발견된다. 예컨대, ACI는 한국의 자활공동체와 유사한 성격의 조직이다. 1960년대에 등장한 CAVA(경제활동적응센터)에서 비롯된 이 조직 유형은 취업대상 중에 저학력, 무자격증 소지자가 많으며 취업 후 활동 역시 지역주민의 미충족 욕구 부응 차원에서 사회적 유용성 제고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취업 중 기술 능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의 대조적인 조직은 TI라고 할 수 있다. 이 조직은 시장 경제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화 혹은 서비스 생산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들의 법적 조직 형태의 대부분은 시장 영역의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다. 한편, AI는 통합 근로자의 직업 훈련 후 취업 알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TTI 역시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AI와 다른 점은 파견 근로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각 조직의 활동 영역이 다르다. ACI는 주로 경쟁력과 무관한 비경쟁 혹은 혼합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3개 조직 유형은 경쟁 영역에

노출되어 있다. 3개 영역 중 가장 노출 정도가 심한 조직은 EI라 할 수 있다. 셋째, 규모면에서 보면, 수가 가장 많은 조직 유형은 ACI이며, 다음으로 EI, AI, ETTI의 순이다. 한편, 국가의 임금 보조 하에 취업 중인 근로자 즉 통합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조직 유형은 AI로서 경제활동 통합 구조에 취업 중인 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ACI, ETTI가 그 뒤를 잇고 있으며 EI에 취업 중인 통합근로자는 13,000여명으로 가장 적다¹³⁾.

이상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4가지 조직 유형이 공통점도 있음이 확인된다. 첫째, 이들 조직은 주로 노동시장 취약집단을 채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청년집단, 사회적 미니멈 수급자, 장기 실업자 그리고 사회부조 수급자 등 일반 노동 시장에 당장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이 채용 대상이며 이들은 채용 후 조직 유형에 따라 공공사업부터 제품 및 서비스 생산, 그리고 직업 훈련 등 다양한 취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경제활동 통합 구조가 빈곤 및 사회적 배제 극복 정책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둘째, 통합 근로자 채용에 대한 보상으로 이들 조직 유형은 예외 없이 임금 보조, 사회보장 부담금 감면 제도, 취업 관련 동행 지원비 등 국가의 재정 지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¹⁴⁾. 이와 같이 통합 근로자 채용은 의무 사항임과 동시에 이들 조직의 지속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한 것이다. 셋째, 법적 조직 형태는 유형별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등 사회적 경제 하위 영역의 성격을 띠고 있다. 물론, EI, ETTI와 같이 상법상 회사로 등록되어 있는 조직 유형도 있으나, 이들 역시 경제활동 통합조직으로 등록된 이상 일반 기업과는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

13) 경제활동 통합조직의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여기구·심창학, 2010: 88-96을 참조.

14) 이런 맥락에서 위의 4가지 조직 유형을 ‘보조계약 의무고용 경제활동 통합조직’라 칭하기도 한다.

다고 할 수 있다.

② 경제활동 통합조직과 Emes의 사회적 기업 범주와의 관련성

위에서 본 것처럼, 경제활동 통합조직은 노동시장 취업 애로 집단의 일자리 창출 및 연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사회적 목적), 통합 근로자의 훈련, 일자리 연계,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등의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경제적 측면)에서 사회적 기업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이는 사회적 기업의 국제 비교 작업을 수행 중인 Emes의 연구 결과와 일치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Emes의 연구 결과와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위의 네가지 경제활동 통합조직의 사회적 기업의 성격을 정리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경제활동 통합조직의 사회적 기업 성격

측면 (dimensions)	범주(criteria)	ACI	AI	EI	ETTI
경제·기업 경영 측면	지속적 생산 활동/재화및서비스판매	약함	중간	강함	강함
	자율성정도	약함	다양함, 대부분 중간	다양함,대 부분 강함	대부분 중간
	경제적 위협정도	약함	중간	강함	강함
	일정비율 이상의 통합근로자	강함 (임금보조 제도)	강함 (임금보조 제도)	강함 (임금보조 제도)	강함 (임금보조 제도)
사회적 측면	지역주민의주도적 참여	약함	중간	중간	중간
	자본소유에 기초하지않는의사결정	강함	강함	강함	강함
	제한적 이익배분	강함	강함	강함	강함
	민주적 참여	약함	약함	약함	약함
	지역사회 공헌목표	강함	강함	중간	중간

자료 : B. Eme and L. Gardin, 2002와 최근의 경향을 바탕으로 필자가 재정리.

위의 <표 4>에서처럼, 프랑스의 경제활동 통합조직은 Emes가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비교 관점에서 시장

경제에 노출되어 있는 조직 유형(예: EI)은 경제, 경영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조직 유형 역시 사회적 측면에서 사회적 기업 성격은 분명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공히 지역주민의 민주적, 자발적 참여 정도는 약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국가의 임금 보조 제도에 의해 통합 근로자의 채용이 의무적이기 때문이다.

구조·기능적 접근방법과 Emes의 사회적 기업 범주의 상호 연계를 통해서 본 결과 프랑스의 경제활동 통합 구조는 사회적 취약 집단의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노동 통합 사회적 기업의 대표적 사례임이 확인되었다. 5300여개의 경제활동 통합조직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약 260,000여개이며, 이 중에서도 빈곤 및 사회적 배제 극복의 공식 파트너인 네가지 조직 유형이 일자리 창출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 공공이의 협동조합 회사 : 프랑스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적 접근방법

1) 법적 접근방법과 사회적 기업 법제화 동향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법적 접근방법은 사회적 기업의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해당 국가의 사회적 기업과 직결된 개별법의 유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개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동법을 통해서 승인된 조직만이 사회적 기업인 것이다. 따라서 이는 개별법의 존재 유무에 관계없이 기능 및 구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구조·기능적 접근방법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¹⁵⁾.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개별법의 제정은 유럽 국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달리 유럽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사회적 기업의 법제화를 시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예컨대, 1991년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최초로 사회적 협동조합법을 제정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법제화했으며, 이외에도 벨기에의 사회적 목적기업에 관한 법(1995년), 프랑스의 공공이익 협동조합 회사법(2001년), 영국의 지역공동체 이익 회사법(2006년)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사회적 기업의 법제화와 관련하여 OECD는 세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¹⁶⁾. 첫째, 협동조합 모델이다. 이는 사회적 기업을 법적으로 특별한 협동조합 회사로 정의하는 경우이다. 이는 협동조합의 전통이 강한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폴란드 사례가 이에 속한다. 둘째, 회사 모델이다. 여기서는 사회적 기업을 영리법인에서 파생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벨기에와 영국이 대표적 사례이다. 셋째, 개방 모델로서 사회적 기업에 관한 별도의 법적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대신 사회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우로 핀란드가 이에 속한다(F. Caffagi, P. Iamiceli, 2009, 29-61).

이상 본 바와 같이 프랑스 공공이익 협동조합 회사는 프랑스 사회적 기업의 법적 접근방법의 대표적 사례임과 동시에 비교관점에서 볼 때 강한 협동조합의 전통이 반영된 것이다.

2) 공공이익 협동조합 회사의 사회적 기업 특징

(1) 등장배경 및 법 제정 과정

공공이익 협동조합 회사(Société Coopérative d'Intérêt Collectif, 이하

15) 물론 특정 조직이 양 접근방법에 모두 부합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16) 이러한 구분의 기준은 사회적 목적과 활동, 비영리 제약과 자산 배분,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거버넌스 구조, 책임성 등 전부 4가지이다(A. Noya (ed.). 2009).

Scic라 칭함)에 관한 법이 제정된 것은 2001년 6월이다. 등장 배경 및 관련법의 제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¹⁷⁾.

첫째, 1997년부터 시작된 당시 정부의 노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1990년대 중반부터 실시되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청년고용제도(Emloi-jeunes)이다. 이는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영리와 비영리가 혼재된 경제적, 경영적 역동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용자, 자원봉사자, 직원 그리고 제3자의 상호 파트너십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 부응할 수 있는 법적 기업 형태를 모색하게 되었는데 이의 결과가 바로 Scic인 것이다.

둘째, 유럽 연합 및 프랑스 학계의 영향을 들 수 있다. 1997년에 발간된 유럽 집행 위원회의 한 보고서는 미래의 욕구에 대처하고 유럽 통합에 대한 기여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제3섹터 조직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발표된 Digestus project (1998년 10월)는 사회적 기업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틀을 제시하면서 이탈리아 모델에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유럽 연합의 관심은 회원국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 프랑스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이의 대표적인 실례가 Alain Lipietz의 연구 보고서(1999)이다. 이 보고서의 핵심 주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과 유사한 안정된 법적 틀을 어떻게 보장하며 무엇이 프랑스 사회적 기업의 특성이 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후자와 관련하여 동 보고서는 사회적 혜택이라는 조직의 목표, 일정 정도 이윤 획득을 위한 경제활동 인정, 민주적 운영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경제활동 제약이라는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의 한계에 대한 비판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논의가 시작

17) 이는 공공이의 협동조합 회사 페이지와 G. Lindsay and L. Hems, 2004의 내용에 근거한 것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협동조합, 공제조합, 단체 중 어느 조직 형태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된 결과 협동조합에서 그 답을 찾았다. 이는 여타 조직 형태보다는 협동조합이 새로운 사회적 경제 조직에 요구되는 성격 즉 경제활동(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성격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합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은 내재적으로 시장 기반적 조직이 사회경제적 조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으며, 다중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넷째,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주로 협동조합 대표 단체, 특히 생산자 협동조합 대표 단체에서 이루어졌다. 1997년 11월부터 생산자 협동조합 대표 단체인 Le Mouvement Scop는 프랑스 맥락과 이탈리아 사회협동조합의 비교, 기존의 협동조합 관련법 중 개정 대상이 되는 법조문의 검토, 유럽 연합 및 외국 사례 검토 등의 작업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명칭 및 조직 특성에 관한 확인을 시도했다. 활동 결과는 결국 협동조합 전국 연합단체(Coop FR)에서 검토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99년 11월 정부 관련 부처인 DGEFP와 협약 체결을 통해 프랑스의 법적 사회적 기업인 Scic가 탄생된 것이다.

다섯째, 공공이익 협동조합 회사 관련법의 특징 중의 하나는 동 법이 공공이익 협동조합 회사만을 다루는 법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회, 교육, 문화 측면의 다양한 조치에 관한 법’이라는 법의 명칭처럼, 공공이익 협동조합 회사는 다양한 조치의 하나로 일부 조항에 언급되고 있다(제36조)¹⁸⁾. 이는 프랑스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이 엄밀한 의미에

¹⁸⁾ Loi no. 2001-624 du 17 juillet 2001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social, éducatif et culturel.

서는 독립법이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 그리고 공공이익 협동조합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면 이 조직의 기원은 협동조합임을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1947년에 제정된 협동조합에 관한 법의 개정¹⁹⁾을 통해서 공공이익 협동조합 회사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공공이익 협동조합 회사는 협동조합의 제도적 위상이 명시되어 있는 1947년 관련법의 범주 내에서 탄생된 사회적 목적을 위한 회사인 것이다.

(2) 공공이익 협동조합 회사의 특징

본 글에서는 아래 네 가지로 나누어 공공이익 협동조합 회사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²⁰⁾.

① 법적 정의 및 조직 형태

관련법 제36조에 의하면 Scic은 상법상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 혹은 유한책임회사의 성격을 띤 협동조합 회사이다. 그리고 이 회사는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 공익 서비스나 재화의 생산 및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항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바 첫째, 기업 성격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즉 단순한 협동조합이 아니라 주식회사 혹은 유한책임회사로서 일반 기업과 유사한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 및 전달이 Scic 활동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둘째, 협동조합 회사의 사회적 유용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먼저 동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익은 단순한 특정 회원 혹은 협동조합의 이익을 초월하여 회사 활동이 시민사회, 대중의 욕구 충족에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전통적인 협동조합은 20%까지만 비회원에게 혜택 제공이

¹⁹⁾ 협동조합에 관한 법 제19조의 수정 보완.

²⁰⁾ 이 부분은 관련법과 해설서(AVISE, 2004와 2005)의 내용에 바탕을 두고 있음.

가능했으나 공공이익의 협동조합 회사는 이에 대한 제한이 없다. 한편, 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적 유용성은 활동 그 자체뿐만 아니라 활동 추구 방식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이를 위해서는 활동의 민주주의적 측면, 다중이해 관계자의 참여, 참여자 활용 능력, 비영리 추구 관리 능력까지도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② 민주주의 운영의 혁신성

기존의 사회적 경제, 특히 협동조합 역시 민주주의 운영 원칙을 존중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이익의 협동조합 회사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혁신적인 성격(novelty)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다중 이해관계자(multi-stakeholder)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 존중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협동조합은 성격별로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제한적, 동질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소비자 협동조합은 소비와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참여만 가능했다. 하지만 Scic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사람들의 참여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적 개념이 바로 동업자(associé) 및 동업자 범주(catégories d'associés)이다. 출자 등의 방식을 통해 공공이익의 협동조합 회사의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동업자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Scic에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동업자들로 구성된 동업자 범주가 적어도 3가지 이상은 있어야 하며, 이 중 직원 동업자 범주와 이용자 동업자 범주는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²¹⁾. 이는 적어도 법적으로는 기존의 협동조합에 비해 보다 광범위한 민주주의적 운영 성격을 담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²²⁾.

둘째, 투표권 행사 방식의 혁신성이다. 기존의 협동조합 역시 출자

21) 이 외, 동법은 자원봉사자 범주, 지자체 범주, 기타 협동조합 회사에 기여하는 자연인 혹은 법인 범주 등을 예시하고 있다.

22) 모든 참여자가 동업자 범주에 포함되어야 할 의무는 없음. 대신 한 동업자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른 범주에는 동시에 들어갈 수 없음.

금의 정도에 상관없이 1인 1투표권을 지향하면서 민주주의 원칙 구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편, Scic는 순수한 의미의 1인 1투표제 대신 집단별 배분 원칙을 동시에 지향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적 용어가 바로 동업조합(collège)이다. 구체적으로 동업자들은 최소 3인, 최대 10인의 구성을 통해 동업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동업조합은 총회가 열리기 전에 의사결정을 위한 사전 회의를 열게 되며 여기서 각 동업자는 1인 1표제의 방식으로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한편, 총회에서의 의사 결정은 동업조합 사전 회의를 통해서 나타난 동업자 개개인의 투표와 동업조합 투표를 동시적 고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동업조합별 투표권 비율(지분)은 해당 동업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동업자의 수에 비례하는데, 유의할 점은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음을 관련법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특정 동업조합은 총회 전체 투표권 비율의 50%이상 혹은 10%이하를 가질 수 없다. 이는 소속 동업자 수의 차이에 의한 투표권 비율의 쓸림 현상을 예방하자는 의도이다. 총회 의사결정의 마지막 변수는 의사 결정 방식(즉, 절대 다수 혹은 비례방식)에 따라 동업조합의 인정 투표권 비율이 다르게 산정된다는 점이다. 이의 구체적 사례는 아래와 같다.

동업조합 A : 10명의 동업자로 구성
 동업조합 A의 총회투표권 : 25% (이는 소속 동업자의 수에 따라 결정)
 동업조합 A의 결정 : 특정 안건에 대해서 8명 찬성 / 2명 반대
 총회의결방식이 절대 다수인 경우 : 동업조합 A의 총회 투표권은 25%(찬성).
 총회의결방식이 비례방식인 경우 : 동업조합 A의 총회 투표권 중 찬성은 20%/반대는 5%

자료 : AVISE, 2004: 15

Scic의 의사결정 운영방식에 대한 평가는 양가적이다. 비판적 견해의 핵심은 이러한 방식이 본질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점이다.

출자 규모에 관계없이 1인 1투표권이 민주주의의 핵심임을 고려할 때에는 기존의 협동조합에 비해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G. Lindsay, L. Hems, 2004, 280).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선 규제를 통해서 지배적 이해 관계자의 지나친 권력 남용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 갈등 해결의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한선 규제는 동업자 수가 극소수인 동업조합의 이해관계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Scic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이러한 양가적인 평가의 엄밀성은 실천 현장 확인을 통해서 가능하다. 분명한 점은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협동조합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이라는 것이라는 것이다²³⁾.

③ 공공 기관의 재정 참여 허용 및 제한적 이윤 배분

공공이익 협동조합 회사의 출자 하한선은 유한 회사인 경우는 없는 반면 주식회사는 하한선이 있다(18,500 유로). 재원 확보에서 기존의 협동조합과 차이가 있는 점 중의 하나는 공공기관,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공공이익 협동조합 회사가 지자체가 동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상법상의 회사임을 의미한다. 즉, 지자체가 출자하는 상법상의 회사 이것이 바로 공공이익 협동조합 회사인 것이다²⁴⁾. 재정 참여의 방식으로 지자체는 공공이익 협동조합 회사에 여러 가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개발촉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운영 부담비 지원(3년간 최대 100,000유로), 훈련비 지원(소요예산의 최대 70%)이

²³⁾ 한편, 경제활동 통합조직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원칙(절차적 민주주의)은 공급의 주체, 공적 서비스 제공 비율과 함께 최근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의 주요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참여연대, 2012.

²⁴⁾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상한선은 일반적으로 전체 자본의 20%이며, 고용 규모가 50인 이상이면 7.5%까지 가능.

바로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 기관은 아래 <표 5>에서처럼 공공 이의 협동조합 회사를 통해서 생산되는 재화의 우선구매를 통해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표 5> 공공이의 협동조합 회사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원 유형

유형	우선 구매	보조금	공공서비스 위탁
비율(%)	63	34	3

자료 : Les Scic en chiffres 2011.

통계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통해서 형성되는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지대하다. 이와 같이 공공이의 협동조합 회사에 대한 지방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은 지속가능성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한편, 상법상의 회사로서 공공이의 협동조합 회사가 영리 배분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성격이 매우 제한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윤의 과반은 반드시 재투자를 위해 적립되어야 하며 이윤 배분의 상한선 또한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관련법은 이윤의 57.5%는 반드시 재투자를 위해 적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예비비 적립 후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윤 배분 가능하나 그 비율이 평균 보수 인상율(TMO)을 상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재투자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한국보다는 그 비율이 낮으나 기본적으로 영리 배분보다는 재투자를 중요시하는 것이 공동이의 협동조합 회사의 운영원칙인 것이다.

④ 조세감면 및 인증제도의 변화

본래 공공이의 협동조합 회사에 대한 특별한 조세 감면 혜택은 없었다. 상법상 회사로서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기업세, 소득세, 부가가

치세 적용대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2007년 이후 약간의 변화가 생겼는데, 예비비로 적립되는 이윤에 대한 기업세 면제가 바로 그것이다.

한편, 등장 후 약 10년간 인증제도가 존속되었으나 2012년 3월부터 인증제도는 폐지되었다. 기존 인증 제도의 내용을 소개하면, 인증 신청 기관은 본사 소재 도청이며 인증 유효 기간은 5년이다. 그리고 인증 기간 중 도지사는 언제든지 협정 내용의 이행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며 불이행 판단 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협동조합과의 비교 관점에서 공공이의 협동조합 회사의 특징을 필자 나름대로 정리하면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협동조합과 공공이의 협동조합 회사의 비교

구분	협동조합	공공이의 협동조합 회사	비교
근거법	협동조합에 관한 법(1947)	사회, 교육, 문화 측면의 다양한 조치에 관한 법(2001, 제36조)	공통점: 협동조합 모델
활동	· 제품 및 서비스 생산 판매 · 금융, 보건의료	· 제품 및 서비스 생산 판매 · 지역개발, 문화, 보건의료	공통점 : 제품 및 서비스 생산 판매, 보건의료 차이점: 지역개발 등 전체 사회 이익 강조
참여자의 성격	제한적, 동질적	· 다중이해관계자, 이질적 · 동업자 (법적용어)	공통점 : 개방적, 자발적 참여 차이점 : 참여자의 광범위성
의사결정 방식	1인 1투표권	· 1인 1투표 + 집단별 투표비율	공통점: 민주주의 원칙 존중 차이점: 동업조합의 기능
재원충당방식	조합원의 출자금	· 동업자의 출자금 · 공공기관 출자	공공기관 출자 가능
공공기관의 지원	--	· 우선 구매 · 운영부담비, 훈련비 지원	공공기관의 지원 역할의 중요
인증제도	--	· 2011년까지 지속, 이후 폐지	

(3) 공공이의 협동조합 회사 설립 및 운영 현황

먼저, 2010년 기준 활동 중인 프랑스 공공이의 협동조합 회사는 전

부 190개이다. 이 중 59%는 신설된 것이다. 기존 조직 중 41% 중 31%는 단체에서 공공이익의 협동조합 회사로 전환된 경우이며 10%는 회사이다. 이는 영리 영역 보다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 중에서 공공이익의 협동조합 회사로 전환된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 <표 7>은 연도별 인증 현황 및 활동 회사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표 7> 공공이익의 협동조합 회사의 인증 및 활동 추이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인증	9	22	28	28	23	24	27	35	27
활동	9	31	55	80	98	112	133	164	190

자료: Les Scic en chiffres 2011 (www.les-scic.coop).

한편, 공공이익의 협동조합 회사의 활동 영역을 살펴보면 신설된 조직을 기준으로 할 때 환경 분야가 29%로 가장 높고, 농업(18%), 지역개발(17%), 문화(13%), 근린 서비스(8%)의 순이다. 이는 사회적 유용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이익의 협동조합의 고용규모별 현황은 아래 <표 8>처럼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표 8> 고용규모별 현황*

연도	2인 미만	2-10인	10인 이상
2007(%)	21	62	17
2010(%)	24	53	23

* 전일제 근로 환산 기준

자료: Les Scic en chiffres 2011 (www.les-scic.coop).

유급 근로자 2인 이상 10인 미만이 53%(2010년 기준)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인 미만 고용 조직도 24%를 차지한다. 최대 고

용은 304명이며 평균 고용 인원은 13.6명으로 집계되었다(2010년 기준). 한편, 이들의 고용 형태 중 가장 높은 비율은 무기 계약으로 67%이다. 한편 임금보조계약제도에 의해서 채용되는 통합근로자의 비율은 전체 고용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사회적 기업을 고려할 때 가장 많은 관심이 있는 부분이 지속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2011년까지 프랑스의 인증 유효 기간은 5년이다. 자료의 한계상 설립 연도는 확인할 수는 없으나 아래 <표 9>는 공공이익 협동조합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표 9> 공공이익 협동조합 회사의 운영기간 (영속성)

운영기간	2년 미만	2년-5년	5년이상
비율(%)	34	37	29

자료 : Les Scic en chiffres 2011 (www.les-scic.coop).

위의 <표 9>에 따르면 공공이익 협동조합 회사의 29%는 설립된 지 5년 이상으로 나타난다. 한편, 공공이익 협동조합 회사의 평균 활동 기간은 3.4년이다. 이는 기존의 인증 유효 기간이 지난 후에도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 지속가능성 부분은 해결이 필요한 문제임을 의미한다.

프랑스 공공이익 협동조합 회사의 현황을 살펴볼 때,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었다는 판단은 무리인 것 같다. 활동하고 있는 회사의 수, 고용 규모의 영세성, 운영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사회적 기업과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용어대신 동업자 용어의 사용을 통한 참여자의 성격 확대, 최소 동업자 범주 수의 규정, 새로운 의사결정방식 제도의 도입 그리고 활동 분야에 대한 고려는 프랑스 공공이익 협동조합

회사가 단순히 프랑스의 법적 사회적 기업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영역의 성격을 부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본 글은 사회적 기업의 정체성 확인 및 영역 설정이라는 목적 하에 구조·기능적 접근방법과 법적 접근방법을 통해 이의 영역 및 구체적인 모습을 프랑스 사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두 가지 접근방법은 본 연구자의 생각일 뿐 이의 세련화를 위해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²⁵⁾.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이 확인되었다.

첫째, 구조·기능적 접근방법을 통한 프랑스 사회적 기업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경제활동 통합조직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사회적 취약집단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통합사회적기업으로서 경제활동 통합조직은 1990년대 말부터 빈곤 및 사회적 배제 극복 정책의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다양한 유형의 통합 구조(조직), 인증제도, 국가 임금 보조 제도를 통한 통합 근로자 채용, 집행과 관련된 지방정부의 강력한 역할 등이 경제활동 통합조직의 특징이다. 약 5,300여개의 경제활동 통합조직을 통해서 260,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둘째, 프랑스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적 접근방법은 공공이익 협동조

²⁵⁾ 강조하건데 두 가지 접근방법은 상호 배제적 성격이 아니라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정체성 확인을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의 실례로서 두가지 접근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한편, 프랑스 사례 분석은 두 가지 접근 방법의 일반화 의도보다는 접근방법의 현실적 유용성에 초점을 둔 것이다.

합 회사(Scic)에 대한 관심으로 귀결된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인 공공이익 협동조합 회사가 등장한 것은 2001년으로 약 10년이 지났다. 국제 비교 관점에서 협동조합의 전통이 반영된 Scic는 프랑스 전역에 약 200개 정도 운영되고 있다. 평균 13명의 고용 규모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이익 협동조합 회사는 프랑스의 새로운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사회적 유용성과 기업정신의 결합, 새로운 민주주의 운영 방식의 도입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기업의 국제 비교의 프랑스 사례로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셋째, 구조·기능적 접근방법과 법적 접근방법을 통해서 그 정체성이 확인된 프랑스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필자 나름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사회적 경제가 주로 단체, 공제조합, 협동조합 그리고 재단으로 이루어졌다면 사회적 기업은 이에 대한 중요한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사회적 기업의 수나 고용규모를 고려한다면 그 영향은 미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의 양대 속성(사회적 유용성과 기업·경영적 속성)결합은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 개념으로서는 설명될 수가 없다.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은 사회적 기업의 등장이 사회적 경제의 정체성 약화 더 나아가서 해체를 가져오는 요인인지 아니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재해석을 통한 외연확장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필자의 잠정적인 답은 후자에 속한다. 왜냐하면 기업·경영적 속성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의 전통적 가치 즉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제한적 이윤 배분,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한 고수 의지가 사회적 기업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는 회원 혹은 조합원이 수혜 집단의 중심에 있다. 이와 달리 지역 주민 더 나아가서 사회 구성원의 욕구 충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등장은 사회적 경제 개념에 대한 재해석의 필요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외연 확장의 토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이는 어디까지나 사회적 기업이 본래의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때에 한한다.

(2012년 8월 28일 접수, 10월 15일 심사완료, 10월 24일 게재확정)

참고문헌

- 노대명. 2007. “한국 사회적경제 (Social Economy)의 현황과 과제-사회적 경제의 정착과정을 중심으로.”『시민사회와 NGO』5(2). 35-71.
- 박찬용. 2012. “프랑스 자활제도의 최근동향과 정책적 함의.”『한국사회정책』19(1). 233-272.
- 심창학. 2007. “사회적 기업의 개념 정의 및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 유럽의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사회보장연구』23(2). 61-85.
- 어기구·심창학. 2010.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관한 국내의 사례연구』. 서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조영복. 2008. 『사회적기업 이해와 국내외 경영사례』. 서울: 노동부.
- 주성수. 2010. 『사회적 경제: 이론, 제도, 정책』.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 참여연대. 2012. 『보편적 복지확대를 위한 공공성 강화방안 토론회 자료집』. 2012년 8월 23일. 서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AVISE. 2004. *Les SCIC, aspects juridiques, organisationnels et financiers*. Paris: AVISE
- AVISE. 2005. *Les SCIC en 40 questions*. Paris: AVISE.
- Borzaga, C., Defourny, J.(ed.). 2001.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Routledge.

- _____ . 2001. "Conclusion: social enterprise in Europe: a diversity of initiatives and prospects."in C. Borzaga and J. Defourny (ed.).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Routledge, 350-378.
- Borzaga, C. and Santuari, A. 2003. "Nouvelle tendances du secteur à but non lucratif en Europe: l'émergence de l'entreprise sociale."in OECD. *Le secteur à but non lucratif dans une économie en mutation*. Paris: OECD. 35-66.
- Brégion, Ph. 2008. *A quoi servent les professionnels de l'insertion ?*. Paris: Harmattan.
- Cafaggi, F., Iamiceli, P. 2009. "New Frontiers in the Legal Structure and Legislation of Social Enterprises in Europe : A Comparative Analysis."in A. Noya (ed.). *The changing Boundaries of Social Enterprises*. Paris: OECD. 25-87.
- Dares. 2011. "L'insertion par l'activité économique en 2008." *Dares Analyses*. 019. 1-11.
- Davister, C. at al. 2004. "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s in the European Union : an overview of existing models." WP No. 04/04. *Perse project. Emes network*. 1-29.
- Defourny, J. 2001. "Introduction: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in C. Borzaga, C., J. Defourny (ed.).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Routledge. 1-28.
- Defourny, J. 2004. "Social enterprise in an enlarged Europe: concept and realities." *Second conference on social economy in the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y* ("Social entrepreneurship & Economic efficiency"), 1-21. Krakow, 27-28 oct. 2004, 1-21. http://www.emes.net/fileadmin/emes/PDF_files/Articles/Defourny/Defourny.Soc.ent.CEE.3.06.pdf (검색일 : 2012년 8월 6일)
- Defourny, J. and Nyssens, M. 2006. "Defining social enterprise." in M. Nyssens (ed.). *Social Enterprise: at the crossroads of market, public policies and civil society*. London: Routledge. 1-26.
- Demoustier, D. 1998. "Des structures diversifiées à la croisée des chemins."in J. Defourny et al.(dir.). *Insertion et nouvelle économie sociale, Un bilan international*.

- Paris: Desclée de Brouwer. 41-72.
- Eme, B. and Gardin, L. 2002. "National profiles of work-integration social enterprises: France." *WP. No. 02/07. Elexies project, EMES network.* 1-39.
- Evers, A. and Laville, J.-L. 2004. "Defining the third sector in Europe." in A. Evers, and J.-L. Laville (ed.). *The Third Sector in Europe.* Cheltenham: Edward Elgar. 11-44.
- Jeantet, Th. 2006. *Economie sociale: la solidarité au défi de l'efficacité.*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 Les Scic, *Les Scic en chiffres 2011.* <http://www.scic.coop/> (검색일 : 2012년 8월 10일)
- Lipietz, A. 1999. *L'opportunité d'un nouveau type de société à vocation sociale.*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 Lindsay, G. and Hems, L. 2004. "Sociétés Coopératives d'Intérêt Collectif: The Arrival of Social Enterprise within the French Social Economy." *Voluntas :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15(3). 265-286.
- Ministère de l'emploi et de la solidarité. 2000. *L'insertion par l'activité économique.*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 Noya, A. (ed.). 2009. *The changing Boundaries of Social Enterprises.* Paris: OECD.
- Office of the Third Sector. 2006. *Social enterprise action plan, Scaling new heights.* London: Cabinet Office.
- <http://www.emes.net/index.php?id=5> (Emes 홈페이지)
- Loi no. 2001-624 du 17 juillet 2001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social, éducatif et culturel (프랑스 공공이익 협동조합 회사 관련법, <http://www.legifrance.gouv.fr/>)
- http://www.scic.coop/entreprise_sociale.htm
- http://www.scic.coop/p324_FR.htm (프랑스 공공이익 협동조합 회사 홈페이지)

Verifying identity and scopes of social enterprises : case of France

Chang-Hack SHIM

This study has, as an exploratory research about identity and scope of social enterprises, the purpose of analysing the characteristics of French social enterprises based on the structural-functional approach and legal approach.

This study has found the following points.

First, SIAE is the representative social enterprises of France in the perspective of structural-functional approach. As work-integration social enterprises which has the purpose of job creation for the disadvantaged, SIAE has installed as the principal partners for policies against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since the late 1990's. Diversity of insertion structure, agreement, application of wage aid contract for the disadvantaged, strong role of the local government can be considered as SIAE's characteristics.

Second, the legal approach about social enterprise in France leads to a concern for Public interests Cooperative Ltd (Scic). Appeared in the year 2001, Scic has the significant meanings of new social economy's organization which not only combines entrepreneurial spirit and social usefulness, introduces also a new way of democracy, despite its short history and modest employment effects.

Third and finally, this study shows that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in France seems to have the chance to expand outer margin of social economy through its reinterpretation, not to provoke weakening identity and dismantling. Because, despite the emphasis on its entrepreneurial

attributes, the traditional values of social economy, that is limited profit distribution, democratic decision-making, independence and autonomy principle, social usefulness and public interest are inherent in the social enterprises. Whether these findings can be accepted generally will be a future research subject.

Key words: French social enterprises, Structural-functional approach, Legal approach, Structures d'Insertion par l'activité économique(SIAE), Sociétés Coopératives d'Intérêt Collectif (Scic).

